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급인력난 해소와 기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IT관련 첨단분야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시 필요한 IT CARD를 발급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을 국내기업이 고용할 시 취업비자(E-7) 취득에 필요한 추천장을 발급한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저희 회사는 연구원을 보강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도입은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력은 전문인력과 단순노무인력으로 구분되며,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단순노무인력은 외국인 고용허가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교수(E-1), 회화강사(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행(E-6), 특정활동(E-7) 등 총 7개 범주로 나누어지며, 각각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자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국내 활동을 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등 첨단과학기술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점차 문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구(E-3) 사증(VISA)은 어떤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연구(E-3) 사증은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증입니다. 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여권과 사증발급신청서 및 체류자격별로 정하여진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던지 또는 국내의 초청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단기사증 즉 일시취재(C-1) 내지 단기취업(C-4)은 직접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그 외 장기사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저희회사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현재 국내의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독일 기술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귀사와 같이 필수전문인력을 국내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되므로 아래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에 제출하여 특정활동(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필수전문인력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고용계약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외투자기업 등록증
- 신원보증서(공증 필요)
- 원 소속 업체의 이적동의서

※참고사이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seoul.immigration.go.kr)